



◆ 공제금 지급 청구시 필요서류

- 공제금 지급 청구서 (청구자 인감도장을 청구서에 날인)
- 인감증명서(신청인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것 - 대리인발급 인감증명서 불가)
-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손해배상 합의서, 화해조서,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등 서류의 사본
  - ※ 손해배상 합의서의 경우 공증 및 인증 필수
  - ※ 공제금 청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공제자(중개의뢰로 피해를 입은 자)가 신청하여야 하며, 피공제자가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판결문이 첨부되어야 함.
- 판결확정증명원 (법원 발급)
- 사고경위서(소장 - 갑호증 포함)
-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민등록초본
  - ※ 초본발급절차
    1. 청구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변제 통지(개업공인중개사의 집주소지로 송부)
    2. 개업공인중개사가 내용증명을 수령한 경우 - 우체국 홈페이지의 인터넷조회 내역을 출력하여 내용증명과 함께 협회에 제출
    - 개업공인중개사가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- 반송된 내용증명과 판결문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초본발급을 신청
- 계약서, 영수증, 확인설명서, 공제증서사본
- 고의, 횡령 사기 등에 의한 사고일 경우 형사고소 후 고소장 및 고소 결과(판결문 등)
- 사고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(말소사항포함/3개월 이내)/분양권의 경우 공급계약서
- 개업공인중개사 최종 주민등록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(말소사항포함/3개월 이내)
- 배당표 및 배당신청서 사본,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(경매의 경우)
- 통장거래내역서 (매매대금, 임대차보증금에 관련하여 통장이체내역 사본)
- ★ 대리인 진행시 : 신청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사본
- ★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★ 상기서류 또는 추가 서류 요청에 의하여 서류 미제출시에는 보상심의위원회예규 제10조에 의거 공제금 지급 청구가 반려되거나 공제금지급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. (서류구비 완료시부터 60일 이내 지급여부를 심사합니다.)
- ★ 등기우편 발송  
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(청룡동 930-42)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층 공제사업부 보상과  
우편번호 08784      전화번호 02-879-1100